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93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서미화 · 박정현 · 김 윤
최혁진 · 조계원 · 박지원
김문수 · 김영환 · 전종덕
정혜경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이용은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출산과 양육, 가사에 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임.

이에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으로 옮기고,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양육·가사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이동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장애

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8조
· 제3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모·부성권”을 “모·부성권과 가정생활”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을 “그 권리를 차별하거나 그 역할을 강제·박탈하여서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생략)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⑤ (생략)

생활-----그 권리를 차별하거나 그 역할을 강제·박탈하여서는-----.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